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00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이인선 · 김기현 · 서지영
김상훈 · 성일중 · 김장겸
안철수 · 정동만 · 김성원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뉘어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표 1에서 정한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 1]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2027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금액	2028년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금액
1구간	1,500만원 이하	[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 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2구간	1,500만원 초과 5,400만원 이하	[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 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3구간	5,400만원 초과 9,500만원 이하	[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 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3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4구간	9,500만원 초과 1억6천만원 이하	[전년도 3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 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4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5구간	1억6천만원 초과 3억2천만원 이하	[전년도 4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 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5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6구간	3억2천만원 초과 5억4천만원 이하	[전년도 5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 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6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7구간	5억4천만원 초과 10억8천만원 이하	[전년도 6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 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7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8구간	10억8천만원 초과	[전년도 7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 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표 2]

서울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2027년 서울	2028년 이후 서울
1구간	과세표준의 6퍼센트	과세표준의 6퍼센트
2구간	9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1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1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3구간	675만원 + (5,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2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2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4구간	1,659만원 + (9,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3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3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5구간	3,934만원 +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4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4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6구간	1억14만원 + (3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5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7구간	1억7,214만원 + (5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6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6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8구간	3억9,894만원 + (10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7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7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표 1에서 정한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 1]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																														
<table><tr><th>종합소득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4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6퍼센트</td></tr><tr><td>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td>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td></tr><tr><td>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td>624만원 + (5,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td></tr><tr><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td>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td></tr><tr><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td></tr><tr><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td></tr><tr><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td></tr><tr><td>10억원 초과</td><td>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td></tr></table>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table><tr><th>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th><th>2027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금액</th><th>2028년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금액</th></tr><tr><td>1구간</td><td>1,500만원 이하</td><td>[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td></tr><tr><td>2구간</td><td>1,500만원 초과 5,400만원 이하</td><td>[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td></tr><tr><td>3구간</td><td>5,400만원 초과 9,500만원 이하</td><td>[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3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td></tr></table>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2027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금액	2028년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금액	1구간	1,500만원 이하	[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	2구간	1,500만원 초과 5,400만원 이하	[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3구간	5,400만원 초과 9,500만원 이하	[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3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2027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금액	2028년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금액																													
1구간	1,500만원 이하	[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																													
2구간	1,500만원 초과 5,400만원 이하	[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3구간	5,400만원 초과 9,500만원 이하	[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3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대금액																													

		$\times (1 + \text{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4구 간	9,500만원 초과 1억6천만원 이하	$[\text{전년도 3구 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times (1 + \text{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text{전년도 4구 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times (1 + \text{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5구 간	1억6천만원 초과 3억2천만원 이하	$[\text{전년도 4구 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times (1 + \text{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text{전년도 5구 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times (1 + \text{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6구 간	3억2천만원 초과 5억4천만원 이하	$[\text{전년도 5구 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times (1 + \text{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text{전년도 6구 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times (1 + \text{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7구 간	5억4천만원 초과 10억8천만원 이하	$[\text{전년도 6구 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times (1 + \text{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text{전년도 7구 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times (1 + \text{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8구 간	10억8천만원 초과	$[\text{전년도 7구 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times (1 + \text{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표 2]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2027년 세율	2028년 이후 세율
1구 간	과세표준의 6퍼센트	과세표준의 6퍼센트
2구 간	90만원 + (1,5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1구 간 최대 종합소득산 출세액) + (1구 간 과세 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의 15퍼센트)
3구 간	675만원 + (5,4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2구 간 최대 종합소득산 출세액) + (2구 간 과세 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의 24퍼센트)

② (생략)	4구간	1,659만원 + (9,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3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3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5구간	3,934만원 + (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4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4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6구간	1억14만원 + (3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5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7구간	1억7,214만원 + (5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6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6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8구간	3억9,894만원 + (10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7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7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현행과 같음)		